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벡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09 발의연월일: 2022. 11. 4.

발 의 자:백혜련·강훈식·고용진

김영진 · 김종민 · 송기헌

윤관석 • 이원욱 • 임호선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거래중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사회적 문제가됨. 계좌번호만 노출이 되어도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행으로, 중고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노출한 사람이나 영업상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임.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수법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업무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
한 대응 등) ① ~ ③ (생 략)	한 대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
	라 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
	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